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% 이하로 한다. 2.~6. (생략)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<u>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u> 2.~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</u>